

제6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0. 10. 14.(목) 16:00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
3. 참석위원 : 최시중 위 원 장
이경자 부위원장
송도균 위 원
형태근 위 원
양문석 위 원 (5인)
4. 불참위원 : 없 음
5. 회의내용
 - 가. 성원보고
 - 나. 국민의례
 - 다. 개회선언
 - 라. 회의공개여부 결정
 - 마. 전차회의록 확인

바. 의결사항

1) LG유플러스의 LG데이콤 및 LG파워콤 합병 인가조건 관련 농어촌 광대역통합망(BcN) 구축계획 승인에 관한 건 - (2010-60-253)(비공개)

2)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- (2010-60-254)

- 허성욱 네트워크기획보호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제48차 위원회(‘10. 8. 13)보고 후 관계부처 협의, 입법예고, 규제심사 과정 등을 거친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.

①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개정안 주요내용

- ①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감리업무 수행자격 완화 (안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)
 - ※ 국토해양부의 요청으로 당초안에 “건축사들도 현행처럼 건축물에 포함된 정보통신 설비의 설계·감리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음을 명문화”하는 내용의 단서 신설(안 제2조)
- ② 공사업체 등록기준 완화 근거 마련 (안 제14조제2항, 안 제66조제4호)
- ③ ‘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실천계획’에 따라 현행 국가사무인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인정·업무정지·인정취소 등의 6개 사무를 지방사무로 이양 (안 제2조 제10호 및 제16호,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,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64조, 제64조의2, 제68조, 제68조의2, 제68조의3)
- ④ ‘정보통신공사종합정보시스템’ 구축·운영 근거규정 마련 (안 제27조제6항 신설 및 제69조제2항제3호)
- ⑤ 정보의 제공을 받으려는 자에 대한 수수료 규정 삭제 (안 제73조제4호)

② 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」 개정안 주요내용

- ① 「전자정부법」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근거규정 마련 (안 제9조제1항, 제39조제1항)
- ② 분할·분할합병에 따른 양도신고 기준일 정비 (안 제22조제1항)
- ③ 전문대의 이수기간별(2년제, 3년제) 차이 불인정 개선 (안 별표2, 별표6)
- ④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 및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(안 별표 8, 별표 10)
- ⑤ 정보통신 공사업자 시공능력 평가방법 개선 (안 별표4)

3) 인터넷광고시장 활성화 종합계획(안)에 관한 건 - (2010-60-255)

○ 홍진배 인터넷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新광고시장을 개척하여 광고시장 전체 규모를 키우고, 유통구조 선진화 및 건전한 이용 기반 조성을 통해 글로벌 인터넷광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마련된 「인터넷광고시장 활성화 종합계획(안)」을 원안대로 의결함.

○ 주요 내용

① 新 인터넷광고시장 개척

① 신유형 인터넷광고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원

- 차세대 인터넷광고 비즈니스 모델 발굴·육성을 위해 '비즈니스 모델 경진대회' 개최, 고정밀·다차원 위치기반서비스(LBS) 등 기반기술을 지원
- '인터넷광고 비즈니스 지원센터' 구축 및 '인터넷광고 국제EXPO' 유치를 통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우리 기술의 해외 홍보 추진

② 「유망 인터넷광고 플랫폼(Global Internet Ad Platform)」인증 확산 지원

- 유망 인터넷광고 플랫폼에 대한 인증제 도입을 통해 국내 광고플랫폼의 활용도를 제고하고, 1만명 규모의 이용자 테스트패널을 구축하여 신유형광고 개발 지원
- '스마트폰 앱의 광고효과분석 시스템' 구축을 통해 '앱'과 '광고'가 효과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하여 동반 활성화를 지원
- 유망 인터넷광고 플랫폼 사업자와 앱 개발자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, 신유형 광고 플랫폼과 결제 시스템 연계 방안 등 마련

③ 인터넷광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

- 인터넷광고 통계 체계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장활성화에 필수적인 신뢰성 있는 기초정보체계 마련

④ 「인터넷광고 전문가(Internet Ad Specialist)」양성 체계 마련

- '인터넷광고 전문가(Internet Ad Specialist)' 양성 프로그램 개발·보급 및 산·학·연 협동 양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실무형 전문인력양성 기반 조성
- 전문교육과정 수료후 취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양성 프로그램-일자리 간 네트워크 연계 추진

② 인터넷광고 유통구조 선진화

① 광고 효과측정 및 유통거래 신뢰성 제고

- '한국인터넷광고진흥협회(KIAA : Korea Internet Advertising Association)' 설립을 통하여 표준화, 모니터링 및 자율심의, 광고연구 등 전문적 업무추진체계 마련
- 인터넷광고 효과측정 기준정립 및 거래 선진화 가이드라인·표준규약 제정 등을 통하여 인터넷광고 신뢰성 제고

② 「인터넷광고 비즈니스 네트워크」 구성 및 운영

- '인터넷광고 비즈니스 네트워크' 구성·운영을 통하여 광고주, 매체사, 이통사 등 비즈니스 이해관계자들의 상생협력의 장 마련
- 인터넷광고 상생협력 비즈니스 우수사례 발굴·시상을 통해 비즈니스 발전 아이디어 공유

③ 인터넷광고 시장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

- 종합적인 인터넷광고 법·제도 정비를 통하여 인터넷광고시장 활성화 기반구축
- 법·제도 정비 전에는 신유형광고 시행에 필요한 가이드라인(개인정보보호 및 자율심의 가이드라인 등)을 보급하여 사업자의 신유형광고시장 적응 및 활성화 지원

③ 건전한 인터넷광고 이용기반 조성

① 인터넷광고시장의 자율정화 기반 강화

-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 회원사 가입확대 추진을 통하여 인터넷광고 자율정화 강화 및 사회적 참여분위기 확산
- '인터넷광고 심의 가이드북' 보급 등을 통해 자율점검 지원

② 인터넷광고 이용자 피해구제 체계 정비

- 원스톱 민원처리센터 운영, 모바일광고 등 신유형광고 조정부 신설 등을 추진하여 이용자 피해구제 및 민원대응 체계 강화
- 한국인터넷광고진흥협회에 부정클릭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인터넷 검색광고 시장의 신뢰성을 제고

③ 신유형광고 활성화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·활용 체계 마련

- 신유형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및 이용자 동의 기반의 개인정보 활용 체계 구축을 통하여 신유형 광고 활성화 지원
- 개인정보의 보호·활용에 관한 이용자 인식 전환 캠페인을 전개하여 이용자의 책임의식 제고

4) 「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」(고시) 제정안에 관한 건 - (2010-60-256)

-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제58차 위원회(‘10. 9. 24)보고 후 규제심사 사전협의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한 「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」(고시)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.

※ 규제심사 사전협의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 반영 내용

- ① 방송법령과의 체계를 맞추기 위해 일부 자구 등을 수정
- ②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에 “이사회 구성·운영현황”에 관한 자료를 추가(안 제12조제2항)

○ 주요 내용

① 고시(안) 주요 내용

① 시청점유율 산정대상 (안 제5조)

- (전체 텔레비전 방송) 방송사업자와 IPTV제공사업자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모든 텔레비전 방송채널
- (특정 방송채널)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 방송채널을 대상으로 하되, 그 텔레비전 방송채널이 IPTV제공사업자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채널을 포함

※ 다만, 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시청점유율 조사가 불가능한 텔레비전 방송채널은 산정 제외 가능

② 일간신문 구독률 산정 (안 제6조)

- (구독률 산정 방법) 방송법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과 동일하게 방통위가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전체발행부수 및 유가판매부수를 기준으로 산정

③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(안 제7조)

- (환산 방식) 일간신문 구독률에 텔레비전 방송과 일간신문의 매체특성, 이용현황 및 시장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매체교환율을 곱한 후 전체 텔레비전 방송채널의 시청률의 합으로 나누어 시청점유율로 환산

④ 매체교환율 (안 제8조)

- **(산정 기준)** 매체교환율은 텔레비전 방송과 일간신문의 매체영향력의 차이로서 텔레비전을 1로 볼 때 일간신문의 상대적인 비율을 말함
·이 경우 매체영향력은 각 매체의 이용자와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하여 측정하며, 측정 결과값을 산술 평균함
- **(매체교환율 공표)** 매체교환율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표하도록 함
※ 2011년도 매체교환율은 2010년에 공표한 매체교환율을 이용하도록 부칙으로 규정

⑤ 시청률의 합 (안 제9조)

- **(산정기준)** 시청률의 합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시청점유율 조사기관의 직전년도 연평균 시청률 자료를 기준으로 함
※ 방통위가 조사기관을 지정하기 이전의 시청률의 합은 국내 시청률 조사기관의 자료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부칙으로 규정

⑥ 시청점유율 조사 (안 제10조)

- **(기본계획)** 방통위는 조사채널, 조사방법, 조사규모 등을 포함하는 시청점유율 조사 기본계획을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
- **(조사원칙)**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표본의 대표성, 조사대상의 적정성, 조사방법의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청점유율을 조사

⑦ 시청점유율 산정 방법 (안 제11조)

- 해당 방송사업자의 본인 및 특수관계자의 시청점유율 : 전부 반영
- 해당 방송사업자가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: 그 다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해당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비율을 곱하여 반영
- 일간신문 구독률 합산
·해당 방송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: 환산한 시청점유율을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전부 반영
·해당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: 환산한 시청점유율을 해당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비율을 곱하여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반영

⑧ 자료제출 (안 제12조)

- (방송사업자)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년 3월 31일까지 시청점유율 산정에 필요한 자료(주주구성, 특수관계자 현황 등)를 제출하도록 규정
- (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)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(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)이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, 일간신문 구독률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, 이사회 구성·운영 현황 등을 3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

㉔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을 위한 매체교환율 공표

- o 동 고시(안) 제8조제5항에 의거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을 위한 매체 교환율(0.49)과 시청률의 합(34.927)을 공표

사. 기 타

1)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o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2010. 10. 20(수),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함.

6. 폐 회 (17:20)